

#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57

제출년월일: 2010. 11. 10.  
제출자: 안산시장

## 1. 제안사유

- 원곡동 원곡연립2단지는 1981년에서 1994년에 준공된 노후건축물로  
서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주하도로 환경받았으  
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번경)」 1단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풍수,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추가 확보 등 관련 법 및 정비 기본계획법 위 대에 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  
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의 입안을 주민제안하였으며
-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2. 주요내용

###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신 실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8번지 일원	64,810.0	2010 안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번경) 반영

### 3. 간호의견

- 원곡동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 계획인 「2010 암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법위내인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50%이하, 높이는 제한없음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장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법령 말해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요약 1부. 끝.

## 5. 정비계획 실정조사

###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비율(%)	내 용
합 총	64,810.0	100.0	정비구역
공동주택용지	53,555.0	82.7	공동주택 및 부대부리시설
종 고 용 지	1,217.1	1.9	원곡정당
소계	9,907.6	15.4	① 가로시설 폐지·태재 : 8,023.5m <sup>2</sup> (12.1%) ② 축부담 공동시설 : 1,944.3m <sup>2</sup> (3.0%)
공동시설 용    지	4,232.6	6.6	-
도로	1,339.7	2.1	-
어린이 공원	4,345.3	6.7	가로공원

### 2) 건축률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명	구 분	개 계획 내용	비 고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 용 도	① 공동주택 및 부대부리시설	① 기존세대수 : 996세대 ② 계획세대수 : 1,145세대 중) 149세대
	건 폐 율	② 50%이하	
	용 적 률	③ 230%이하	
	높 이	④ 106m이하(최고35층이하)	
	건축한계선	⑤ 종로1-13호선 : 2~6m ⑥ 종로2-6호선 : 3~6m ⑦ 광로1-1호선 : 6m ⑧ 대로3-1호선 : 2m	⑨ 균일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 2~3m 적용

주) 최고높이산정: 1층~4m, 2~34층~2.9m, 35층(지붕포함)~6m {4+(2.9×33층)+6} = 105.7m

### 3)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관 리 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근 련 생활시설	주 운동시설	민 경로당	민 주 공동시설	보 육 시설	문 고	휴게 시설	경비실
면적 (m <sup>2</sup> )	150	1,500	6,870	1,100	280	1,000	200	100	3개소	60.0

## 3. 결론 및 결

원곡동 원곡원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 계획인 「2010’ 광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임대인 용적률 230%이하, 단계율 50%이하, 높이 15m 세한입법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법령 및 제 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시민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으)로 상당한 기간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원곡원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요약 1부. 끝.

원곡연립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

원곡연립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 상위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범위 내의 용적률 230%, 건폐율 50%, 높이는 제한이 없음으로 기본계획에 적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해하기 바람.
-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 주변경관과 부합되게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여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공간 확대로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단, 단지 내 조성되는 가로공원(소공원)은 근린생활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로니에 공원(평면화 공원-벤치, 조경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